

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

2021. 5. 대검찰청

- 2021. 4. 29. 헌법재판소는 구 수질환경보전법(1995. 12. 29. 법률 제 5095호로 개정되고, 2004. 10. 22.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1조 중 ‘법인의 대리인,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’ 부분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.[2019헌가2]
-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(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, 제4항, 제5항)
- 재심절차 안내
 - 재심청구권자(형사소송법 제424조)
 -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
 -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
 - 재심신청 방법
 -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(형사소송법 제423조)
 - 단,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규정(재소자에 대한 특칙)이 준용되므로,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(제420조 내지 440조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